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45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MON89034×MON810×MIR162×MON87411×MON87419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MON89034× MON810×MIR162×MON87411× MON87419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9-5호	2019. 7. 11.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49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등록번호	주소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 (China Hao Ran Recycling Co., Ltd)	1353148	32 Floor Jardine House 1 Connaught Place Central Hong Kong

2. 서류의 명칭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사항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증권선물위원회는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관해 조사한 결과 조치사항(2019.7.3.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2. 아울러 동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동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증권선물위원회 조치결과(2019.7.3.) 1부.